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6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4. 5.
- 라. 회부일자 : 2021. 4. 5.

### 2.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수석부회장 직 추가(안 제5조)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권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 나. 임원 임기 연장(안 제6조) : 1년 → 2년
- 다.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안 제7조 신설)
- 라. 정기총회 횟수 조정(안 제8조)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
- 마. 사무국 지위 승격(안 제14조, 제15조) : 사무국 → 사무처

## 바. 분과위원회 신설(안 제17조)

- 1)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58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안이유와 관련근거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sup>1)</sup>에 따라 2018. 10. 15.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2020. 10. 14.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sup>2)</sup>에 따라 2021. 1. 29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동의절차 이행 협조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2021. 4. 5.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1)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2)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검토결과

### (1) 운영규약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됨

- 개정된 규약은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 명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등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약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4조(협회의의 규약)<sup>3)</sup>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음.
- 아울러 본 협의회는 붙임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23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111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정부 간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협의회로서,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의 시행(2022. 1. 13. 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기존 가입 협의회, 협의체 관리 철저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방지 노력이 필요

- 금천구는 2021. 3월 기준으로 16개 행정협의회, 3개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바,**(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 붙임 3)**

3) 제154조(협회의의 규약) 협회의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회의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난 제227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2062호로 상정·심의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 시 언급했던 것처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등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사용하는 협의회가 많아, 명칭·성격 중복 및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음.
- 특히 15개 협의회에 55,600천원, 3개 협의체에 25,500천원의 분담금 등 각종 협의회, 협의체에 총 81,100천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예산 낭비로 보일 소지가 있는 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분담금 미확정으로 집계 제외)
- 본 규약 개정안을 동의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일반현황 및 회원 지방자치단체 현황 1부.

3.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1부.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52조(행정협회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4조(협의회의의 규약)** 협의회의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8조(협의회의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협의회 기본현황****□ 설립 취지**

-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상 근거를 둔 행정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의 실질적 활동력을 담보하고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설립 현황**

- 설립 일 : 2018. 10. 15. (창립총회 개최)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
- 구성보고 : 2018. 12. 26.

**□ 설립 목적**

-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포용적 동반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모색·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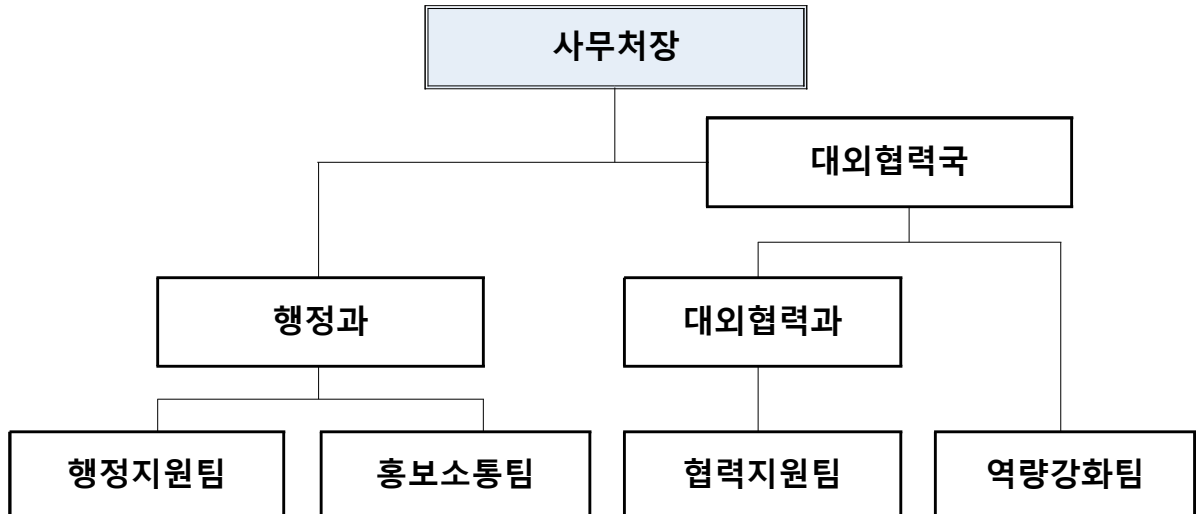
**□ 임원 현황**

- 회 장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 수석부회장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 사무총장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 감 사 :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한대회 경기 군포시장
- 고 문 :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 부 회 장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박상욱 경기 오산시장,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 □ 사무처 조직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8, 605호, 606호(오성빌딩)
- 사 무 실 : 72.71㎡(22평, 605호), 59.50㎡(18평, 606호)
- 사무처 조직도



## ○ 직원현황

- 채용 직원(3) : 사무처장 1, 대외협력과장, 홍보소통팀 1
- 파견공무원(6) : 대외협력국장 1, 행정과장 1, 행정지원팀 2, 협력지원팀 1, 역량강화팀 1



지역	가입 (111)	
	의회 의결 및 고시 (85)	의회미상정 (26)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20)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3)
부산	-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7)
인천	중구, 미추홀구, 옹진군 (3)	동구, 남동구, 서구 (3)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3)	동구, 중구 (2)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4)	동구 (1)
경기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양주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군포시, 하남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2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3)
강원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4)	양구군, 인제군 (2)
충북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3)	-
충남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7)	서산시 (1)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6)	진안군 (1)
전남	순천시, 담양군, 구례군, 영광군 (4)	보성군, 함평군 (2)
경북	-	구미시 (1)
경남	창원시, 거제시 (2)	-

## □ 추진연혁

- '18.10.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준) 창립총회 개최
- '18.12.17. 회장단-여당 대표 간담회(국회)
- '19.01.28. 협의회 고유번호증 발급(비영리단체)
- '19.02.14. 사무국 사무실 개소(서울 여의도)
- '19.04.12. 기초지방정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대전 서구)
- '19.06.05. 통일부 장관 초청 남북교류협력사업 간담회(남북회담본부)
- '19.06.28. 참좋은 정책설명회 개최(대전 동구)
- '19.07.03~04. 2019 전국 기초지방정부 보좌진 워크숍 개최(충남 부여)
- '19.11.24.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충남도청)
- '19.12.0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019 정기총회(국회)
- '20.01.17.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울시청)
- '20.09.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업무협약 체결
- '20.10.14. 2020년도 임시총회 개최(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 '20.10.16. 광주·전남·전북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광주시청)
- '20.11.17. 회장단-정세균 국무총리 간담회(삼청동 총리공관)

### 붙임 3

##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 가입현황

(2021. 3월 기준)

#### □ 행정협의회 현황(지방자치법 제152조)

연번	협의회 명칭	회원단체	회 장	가입일	부담금 (천원/년)	소관부서
1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수도권 13개 지자체	구로구청장 안양시장	'99. 4. 29.	-	환 경 과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전국 86개 지자체	서울시 강동구청장	'11. 8. 25.	2,000	건강증진과
3	경부선철도 지하화 추진협의회	수도권 7개 지자체	서울시 동작구청	'12. 5. 3.	-	교통행정과
4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7개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청장	'13. 3. 20.	10,000	지역경제과
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 177개 지자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13. 3.	4,000	교육지원과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88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5. 9. 14.	5,000	아동청년과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55개 지자체	수원시장, 강릉시장, 강동구청장	'15. 8. 13.	2,000	마을자치과
8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2개 지자체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15. 11. 16.	10,000	기획예산과
9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26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7. 4. 7.	2,000	기획예산과
10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7개 지자체	서울시 성동구청장	'16. 6. 26.	2,000	지역경제과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36개 지자체	충남 당진시장	'16. 12. 16.	3,000	환 경 과
1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전국 52개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장	'18. 3. 31.	5,000	교육지원과
13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전국 29개 지자체	서울시 금천구청장	'18. 11. 15.	2,000	문화체육과
1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전국 26개 지자체	구로구청장	'19. 4. 23.	3,600	여성가족과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 111개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장	'20. 8. 27.	5,000	기획예산과
16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전국 48개 지자체	창립총회 시 선출	'20. 2. 26.	미정	기획예산과

#### □ 협의체 현황(지방자치법 제165조)

연번	협의체 명칭	가 입 자치단체	회 장	가입일	부담금 (천원/년)	운영부서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기초지자체	충남 논산시장	'96. 12. 11.	10,000	기획예산과
2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자치구청장	서울시 도봉구청장	'95. 8. 12.	8,000	기획예산과
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광역지자체	전라북도지사	'10. 3. 4.	7,500	지역경제과

## ※ 가입의 법적근거

### (1) 행정협의회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 행정협업체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업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업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업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업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업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업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업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